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538

발의연월일: 2021. 9. 14.

발 의 자: 추경호·김상훈·김선교

김용판 · 조명희 · 윤창현

김예지 · 이주환 · 성일종

백종헌 · 엄태영 · 이종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장애인·고령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기간제 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고용유지중소기업,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이하 "고용증대기업등"이라 함)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각각 2 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일정 기간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증대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 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의7제1항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	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u>2021년 12월 31</u>	<u>2024년 12월 31</u>
<u>일</u>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u>일</u>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	
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	
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	
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
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	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	
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	
간근로자를 <u>2021년 12월 31일</u>	<u>2024년 12월 31일</u> -
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	
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 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③ (생 략)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 3. (생략)
- ② (생 략)
-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

<u>_</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
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4년
12월 31일
<u> 12 e 01 e</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2024년 12월 31일

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 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② ~ ⑥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u>2024</u>
년 12월 31일
<u>.</u>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